

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 · 개정 사항(2005년 3/4분기)

해양수산부 제공

▣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49호, 2005. 7. 21)

○ 개정사유

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 개정사항 수용 및 규제완화

○ 주요내용

가. 500톤이상 산적화물선의 선미에 자유낙 하식구명정 비치(제82조제3항 관련)

-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사항 수용

나. 선박(어선 제외)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5년이내의 팽창식구명뗏목 정비시기 완화(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- 매년→제조일로부터 3년 및 5년이 되는 날 정비

※ 자동이탈기는 종전과 같이 매년 정비

다. 5년이내의 팽창식구명뗏목 정비에 대한 유의사항

- 제조일로부터 3년미만 : 3년이 되는 날 까지 정비유예

- 제조일로부터 3년~5년 : 5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유예

※ 1) 정비 유예시는 3년(36개월) 또는 5년(60개월)이 되는 날 구명뗏목 정비를 위한 임시검사를 지정하되, 중간검사 시기(검사기준일 전후 3월)와 겹칠 경우에도 임시검사 지정

2) 기이 지정된 구명뗏목 정비를 위한 임시검사가 도래한 구명뗏목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사없이 1)에 따라 다시 임시검사 지정가능

○ 시행일 : 2005. 8. 21

▣ 부선의구조및설비등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52호, 2005. 7. 27)

○ 개정사유

예선에 예인삭이 비치된 경우 부선에는 예인삭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인삭 비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

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○ 주요내용

- 가.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사용하는 예인삭의 비치방법을 개선(제24조 관련)
 - 모든 부선에 예인삭 → 예선에 예인삭
 - 비치는 부선에 비치 생략
- 나.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사용하는 예인삭의 길이 산정방법 개선(제25조제1항 관련)
 - 부선의 길이(m)의 2분의 1
- 다. 최초검사시 등 예인속력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속력의 기준을 정함(제25조제3항 관련)
 - 부선의 마찰저항(Rf) 계산시 예인속력(V)을 알 수 없는 경우 → 7Knots로 함
- 라. 부선의 공기저항(Ra) 계산시 실제 항해 중의 풍속(Vw)은 검사시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, 항해구역별 선박복원성기준 적용시의 최대풍속을 적용(제25조제3항 관련)

○ 시행일 : 2005. 8. 27

▣ 강선의 선체구조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51호, 2005. 7. 27)

○ 개정사유

강선의 창구덮개판 치수산정시 사용되는 하중기준 강화 등 국제만재흡수선협약

(ILL)의 개정사항을 수용하고, 어선의 선수격벽 배치시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○ 주요내용

- 가. 연해구역 이하를 항행하는 강선에 대한 부재치수 경감규정 도입(제3조제3항 관련)
- 나. 비교적 해상상태가 양호한 연해구역이하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하지 침서의 비치를 면제토록 함(제49조제1항 관련)
- 다. 선박에 작용하는 좌굴응력의 평가시는 인장과 압축응력 등과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함(제54조 관련)
- 라. 어선의 선수격벽의 설치위치 규정을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및 연해구역 이하를 항행하는 선박과의 형평성을 감안, 동 선박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어선 구획시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(제221조 관련)
- 마. 타두재에 키홈이 있을 경우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두재의 테이퍼 기준치를 정함(제297조 관련)
- 바. 일체형이 아닌 타두재의 플랜지 커플링에 관한 규정을 보완(제305조제3항 관련)
- 사. 리더트링크가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

- 하기 위하여 시일 및 스테핑박스를 설치하는 등의 규정 보완(제314조 관련)
- 아. 강선의 침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구덮개판 치수 산정시 사용되는 하중을 “1~1.75ton/m²”에서 “2~3.5ton/m²”로 상향 조정할 국제만재흡수선협약(ILL) 기준을 수용함(제316조 관련)
- 자. 창구덮개 부식여유두께 치수 및 지지부재 등의 구조기준을 국제만재흡수선협약(ILL)의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보완함(제321조 내지 제322조의2 관련)
- 차. 이동식 창구보를 지지하는 캐리어 등의 구조기준을 국제만재흡수선협약(ILL)의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보완함(제323조

내지 제325조 및 제331조 관련)

- 카. 코밍의 높이에 대하여 어선은 상갑판 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을 감안, 코밍이 너무 높을 경우 위험함으로 어선의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완화함(제454조 관련)
- 타. 현창크기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사용유리의 크기 등에 따른 허용압력 등을 감안하여 두께를 산정할 수 있게 하여, 한정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유람선에 대한 관광객의 시야확보를 위한 현창의 크기조정 근거 마련

○ 시행일 : 2005. 8. 27